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1조의7(허가기준)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1조의8(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)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제41조의2제2항제1호 · 제2호 · 제4호 ·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

2. 삭제 <2019. 6. 28.>

3.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
4.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1조의9(처분기준)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<개정 2022. 9. 30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1조의10(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시 · 도지사,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41조의11(준용규정)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,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 · 재발급, 운임 · 요금 신고, 운송가맹약관 신고, 분쟁조정 신청,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· 재발급,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,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,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, 택시 유사표시행위, 위탁화물의 관리책임,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, 사업 양도 · 양수 신고, 법인합병 신고, 상속 신고, 사업 휴업 · 폐업 신고,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(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(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처분사실의 통지, 처분사실의 기록 · 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(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8조, 제15조(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의8(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), 제18조의9(제1호는 제외한다), 제18조의10, 제19조, 제21조(제2호, 제18호,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,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21조, 제22조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), 제23조(제4항 및 제6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, 제5항은 제외한다)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화물자동차 운송사업”을 “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”으로, “운송약관”을 “운송가맹약관”으로, “관할관청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”를 “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”으로 본다. <개정 2011. 12. 31., 2012. 12. 6., 2013. 3. 23., 2014. 1. 16., 2014. 4. 30., 2015. 12. 31., 2016. 6. 30., 2024. 12. 18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